

# 2023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운영 매뉴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돌봄공동체 사업운영기관 성과관리 지원

# 2023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운영 매뉴얼

1. 사업개요	1
2. 가족센터 주요 업무	6
3. 돌봄공동체 주요 업무	22
4. 교육 및 컨설팅단 운영	33
5. 실적 관리	37
6. 사업 예산	39

## 1. 사업 개요

### 가. 사업 목적

-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공적돌봄의 틈새 극복과 안전한 돌봄 제공
- 지역 내 돌봄 유관기관과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촘촘한 돌봄망 구축

### 나. 주요 개념

- ‘돌봄공동체’란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넘어 여러 형식으로 마을 아동을 돌보는 활동을 하는 이웃을 의미
  - 돌봄주체는 이웃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육아 활동에서도 아이와 함께 주양육자가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양육자 없이 마을 내 아동만도 참여할 수 있고, 주양육자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나 돌봄에 참여할 수 있음.
  - 돌봄공동체의 돌봄은 1시간 단위 또는 30분 단위로 시작과 끝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차시로 구분되지도 않으며, 같은 돌봄공동체의 돌봄 활동일지라도 아동들과 삼삼오오 각기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음.
    - 예) 돌봄주체자들의 보호 하에 돌봄 아동 3명은 보드게임을 하고, 2명은 책을 읽고, 2명은 낮잠을 자고 있는 것도 돌봄 활동임
- ‘돌봄주체’란 돌봄아동의 부모, 양육자, 마을 주민 등 돌봄공동체에서 아동 돌봄을 실천하는 구성원을 의미
  - 돌봄주체들은 상호 협력관계이자 수평적 관계임. 돌봄공동체는 대표의 결정에 따르는 구조가 아니라 돌봄주체들이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함.
    - ※ 돌봄공동체에 자녀만 보내고, 돌봄 활동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 경우는 본 사업 취지를 벗어남.
- ‘돌봄 활동’은 양육자 및 주민들이 돌봄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돌봄주체가 아동을 돌보는 활동 일체가 돌봄 활동임.
  - (일상돌봄) 돌봄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돌봄 시간대, 시기를 의논해서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모든 돌봄을 의미
  - (긴급돌봄)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으나 양육자·아동·방역 등의 돌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진행되는 돌봄을 의미
  - (돌봄장소)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면 공간과 장소의 제약을 두지 않으며 야외 활동에서부터 가정 내 소규모 돌봄까지 모두 가능함.

## 다. 법적근거

- 「건강가정지원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 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라. 사업 방향

- 양육자가 돌봄의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자발적·능동적 참여 촉진
- 공동체와 사업운영기관,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공동체 돌봄 확산
- 공동체와 돌봄주체 모두의 성장을 도모
- 사업운영기관의 지역사회 돌봄 지원 네트워크 기반 강화

### 공동육아나눔터 및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

- 가족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및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 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공적 공간을 중심으로 이웃과의 유대를 통해 자녀 돌봄을 상호 지원, 부모 참여 방식의 돌봄을 촉진시키고 공동체 돌봄활동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 의미를 가진다.(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매뉴얼 p. 4)
-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양육자 이외의 이웃을 적극적으로 돌봄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과 가족품앗이 활동의 성과를 지역사회로 확장시키는 사업이다. 즉, 양육자와 사회가 함께 아동을 돌보는 “사회적 돌봄”의 실현과 이웃이 돌봄에 참여하는 공동체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돌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가족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 마. 사업 내용

- 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돌봄 자원과 돌봄공동체 3~5개소를 발굴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돌봄 협력체계 구축하며, 사업 홍보와 운영실적을 평가함.
  - 사업 운영기관의 주요 업무: 돌봄자원 발굴, 돌봄공동체 선발, 돌봄공동체 지원, 돌봄활동 연계, 홍보, 사업 평가, 행정 업무 등

&lt;표 III-1&gt; 운영기관 사업 내용

항목	내용	담당자
돌봄 자원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돌봄 환경 조사: 영유아 및 초등돌봄 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수집, 돌봄공동체 사업에 대한 활동 욕구 및 수요 파악</li> <li>■ 돌봄공동체 활동 가능한 공간, 공동체 조사 :</li> </ul>	사업 담당자
돌봄공동체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공동체 모집 공고, 사업설명회 개최</li> <li>■ 돌봄공동체 선정위원회</li> </ul>	사업 담당자
돌봄공동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지원 : 회계 및 사업계획서 지원, 안전 관리 등</li> <li>■ 돌봄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추진 과정 애로사항 등에 대한 수퍼비전</li> <li>■ 돌봄 주체 역량 강화</li> <li>■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운영(분기별 1회 이상)</li> </ul>	사업 담당자
돌봄 활동 연계	■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설계 및 협조	부서장, 사업 담당자
	■ (관내 돌봄 유관기관)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센터장, 사업 담당자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홍보,</li> <li>■ 우수사례 발굴,</li> <li>■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li> </ul>	사업 담당자
사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실적 수합</li> <li>■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li> <li>■ 사업추진 성과보고서 작성</li> </ul>	사업 담당자
행정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 작성</li> <li>■ 돌봄공동체 활동 계획 취합 및 검토와 조율</li> <li>■ 센터의 돌봄공동체 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li> </ul>	사업 담당자

- 돌봄공동체 : 아동 돌봄 활동과 사업운영기관(가족센터)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참여
- 공동체의 돌봄 수요에 따라, 도시형 돌봄과 농산어촌형 돌봄 활동 선택 가능
  - 도시형은 주 2회 이상 기본돌봄을 연중 지속 추진
  - 농산어촌형은 일상돌봄을 연중 유지(주 1회 이상)하지만, 일손이 바쁜 시기에 집중돌봄 추진 가능
- ※ 농산어촌형 돌봄활동은 돌봄참여 아동의 주양육자의 50% 이상이 농산어업 종사자인 경우이며, 집중돌봄 시기는 지역의 작목 품종이나 수확 특성 따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음.

<표 III-2> 돌봄공동체 사업 내용

항목	도시형	농산어촌형
돌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돌봄 주 2회 이상 권장</li> <li>■ 긴급돌봄</li> <li>※ 강사활용 프로그램 전체 시간의 20% 미만 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돌봄 주 1회 이상 권장 (농번기 등에 집중돌봄 가능)</li> <li>■ 긴급돌봄</li> <li>※ 강사활용 프로그램 전체 시간의 40% 미만 권장</li> </ul>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운영기관(가족센터)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참여</li> <li>■ (필요시) 자체 교육</li> </ul>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 관리</li> <li>■ 돌봄주체회의 운영</li> <li>■ 월별 사업실적 보고([서식 2-2] 돌봄공동체 사업 실적보고서)</li> </ul>	

### 농산어촌 기준

아래 농산어촌 기준과 공동체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농산어촌형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돌봄 수요는 아동 양육자 직업을 기준으로 50% 이상이 농산어업 종사자인 경우를 의미함.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 5항에 따른 지역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2. 산림기본법 제 3조 2항에 따른 지역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 3조 6항에 따른 지역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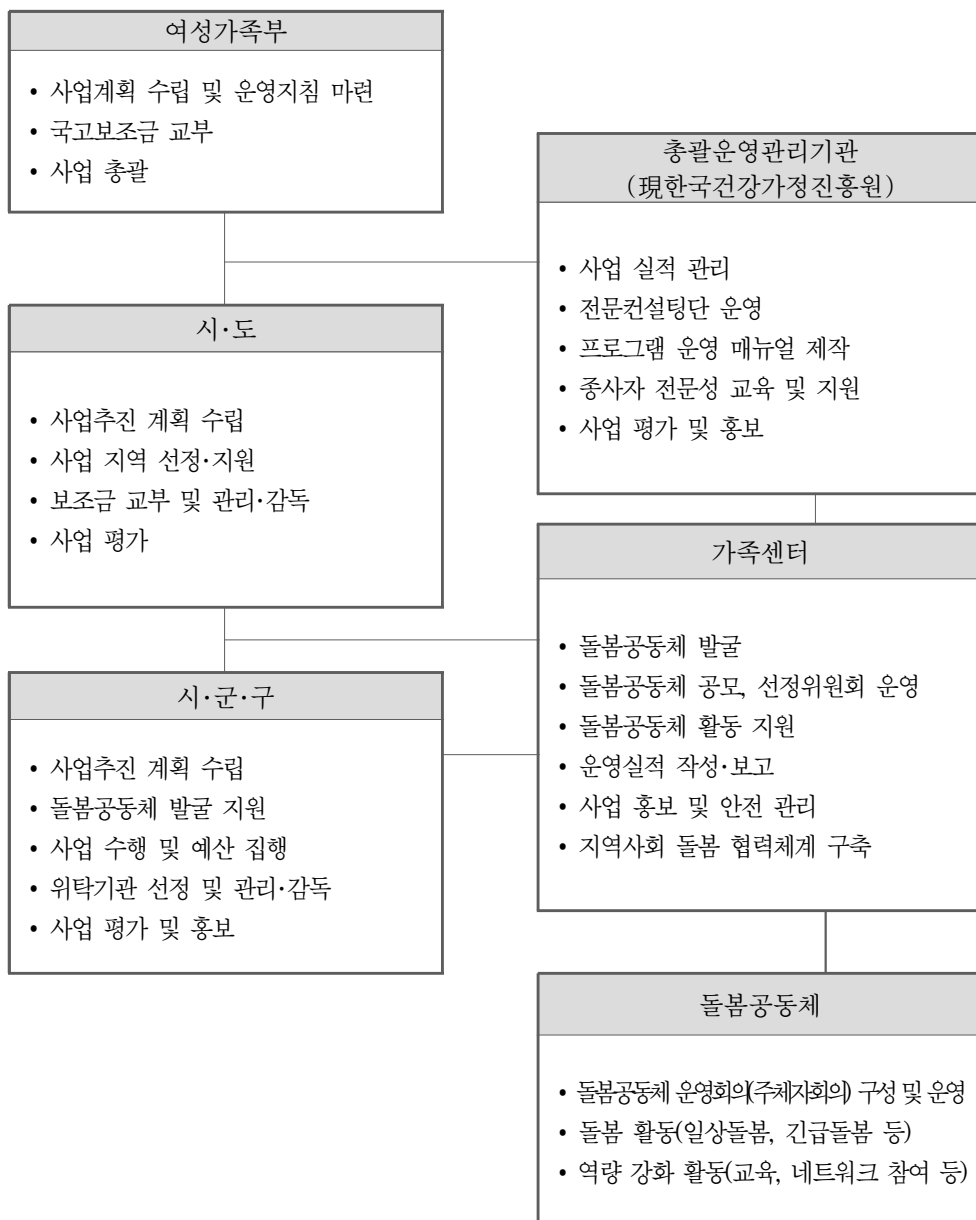
#### 바. 추진연혁

- 2019년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사례 발굴

- 2020~2022년 돌봄공동체 육성,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2020년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에는 10개 운영기관과 33개 돌봄공동체
  - 2021년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에는 12개 운영기관과 44개 돌봄공동체
  - 2022년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에는 12개 운영기관과 56개 돌봄공동체

## 사. 추진체계

[그림 III-1] 돌봄공동체 사업추진체계



## 2. 가족센터 주요 업무

### 가. 돌봄공동체 사업담당자

#### 1) 배치

- 돌봄공동체 사업담당자는 1명 이상 배치하며, 센터 직원 채용과 동일한 방식의 채용 절차를 추진함.
  - 공개 채용 공고-서류전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절차
  - 센터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발 및 심사표 작성
- 사업담당자 자격여건은 센터의 팀원 자격과 동일함
  - ※ 사업담당자는 팀원 기준에 준하여 인건비 집행, 호봉 책정, 교육 및 복무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체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공동체 활동 경력
■ 주민자치 또는 공동체 조성 및 지원 관련 업무(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업무를 연구, 기획, 실행, 관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과 유사한 기관 근무 등)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종사 경력으로 판단함.

-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인사위원회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인사 발령 가능
  - 2020~2022년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통해 코디네이터로 기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고 팀원 자격요건을 구비한 경우
  - 직영센터에서 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직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 센터 직원을 보직 변경하는 경우

#### 2) 직무

- 돌봄공동체 사업담당자는 돌봄공동체 사업 전반을 관리함.
  - 지역환경 분석과 돌봄공동체 지원 자원 발굴 및 관리
  - 돌봄공동체 발굴과 선발, 돌봄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활동 지원, 주기적 활동 점검, 사업 평가
  - 돌봄공동체 사업 관련 자료 관리(현황, 운영실태, 성과 등)와 홍보 지원
  - 돌봄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



**[돌봄공동체 사업 담당자 역할]**

- 지역사회 환경분석을 통해 돌봄공동체 사업에 대한 활동욕구 및 수요 파악
- 지역사회 영유아 및 초등돌봄 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수집
- 돌봄공동체 활동 가능한 공간, 돌봄활동 가능한 공동체 조사와 활용 자원 발굴 및 목록화
- 홍보: 신규 공동체 발굴, 돌봄공동체 사업 성과 또는 우수사례
- 돌봄공동체 공개 모집 공고와 사업설명회 운영, 돌봄공동체 선정위원회의 운영지원
- 사업계획 수립 : 돌봄공동체 활동 계획 취합 및 검토, 조율, 센터의 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평가: 돌봄공동체 사업 실적 수합,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센터 지원 사업 집계, 사업추진 성과보고서 작성
- 돌봄공동체 현황 및 돌봄 활동 파악과 지원
  - 월 1회 이상 돌봄공동체 현장 방문, 애로사항 및 교육 수요 파악 등
  - 돌봄공동체 역량 강화: 돌봄주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기획 및 진행
  -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지원
  - 돌봄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우수 돌봄 프로그램, 지역사회 문화활동 정보 등
  - 돌봄공동체 성과 관리
-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자원과 돌봄공동체 간 연계, 공동육아나눔터 등 가족센터 돌봄사업 연계, 공동체 간 연계, 돌봄기관과 연계
- 행정: 공동체 회계업무 지원, 업무 현황 보고 등

**나. 돌봄 자원 발굴**

- 돌봄공동체를 발굴·지원하고, 가족센터가 지역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역사회(인적·물적) 돌봄 자원 파악

**1) 지역사회 돌봄 환경 조사**

**가) 전반적인 돌봄 여건**

**(1) 돌봄 요구의 기반이 되는 가구 현황**

- 시군구의 세대별 인구 추이, 가구 구성 및 가족환경 특성(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비율 등)
- 시군구 주요 산업, 규모별 사업체 현황, 사업체의 일·가정 양립 현황 등

**참고 가능 통계**

-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연령별 혼인상태, 연령별 세대구성, 거주기간별 가구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비율, 자녀연령별 맞벌이 가구 현황, 직종별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 통계청 KOSIS,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 산업별·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 행정통계: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 시군구 자체 통계 있어야 확인 가능: 자녀돌봄 방법, 부부간 자녀 돌봄 분담, 사업체 일가정 양립 현황

(2) 관내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돌봄 현황

○ 시군구 내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 사업 추진 현황 자료 수집

<표 III-3> 정부 지원 돌봄 유관 사업(2022)

구분	대상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만 0~5세 아동	- 기본보육 - 연장보육: 1일 7~12시간 보육과정 시간 구분 - 야간보육: 최대 24:00까지 휴일(야간보육은 오후 7:30~오전 7:30까지) 토 요일은 15:30~24:00	기관보육/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서비스	양육수당 수급 아동 (6개월~36개월)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월~금(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일시돌봄/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 서비스	- 영아종일제 - 시간제(3개월~12 세) - 질병감염아동지 원(만 12세 이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만 0세~12세	- 영아종일제서비스: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 염아동지원서비스, 기 관연계서비스: 1회 2 시간 이상 신청	가정 개별 보육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만 3~5세	방과후과정 19:30까지 운영시간 권장	유치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0~5세	9시~18시	상담, 장난감 및 도서 등 대여, 놀이공간
공동육아 나눔터	영유아, 아동 및 부모 등 보호자	주 5일(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 이상). 평일 야간 또는 주말 권 장(주말 운영 시 평일 휴 무 가능)	장난감 및 도서 대여 가능 자녀돌봄 품앗이
다함께 돌봄센터	만 6~12세 아동	- 학기중: 14시~19시 - 방학중: 9시~18시	상시·일시 돌봄, 방과후 프로 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등 ※ 급·간식 제공가능
지역아동 센터	돌봄취약 아동과 일반아동	- 학기중: 14시~19시 - 방학중: 12시~17시	보호(급식 등), 교육(생활 지도, 학습 등), 정서(상담·가족지원),

구분	대상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만 18세 미만)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문화(체험, 공연) 등
초등돌봄 교실	초 1-6학년+	- 학기중: 방과후~17시 (일부 저녁돌봄 운영) - 방학중: 자율	개인활동(숙제, 휴식 등), 단체활동 프로그램, 급·간식 지원
방과후학교	초·중·고	방과후	주로 교육 및 놀이 활동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취약계층 청소년(초 4~중 3)	- 학기중: 방과후~21시 - 방학중: 자율	기초학습지원, 체험, 급식, 상담, 부모교육, 귀가지도

○ 영유아 및 취학 아동 공공서비스 참여 비율(영유아, 초등저학년, 초등 고학년 등) 파악

### (3) 돌봄 활동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가용 자원

- 아동돌봄 관련 프로그램이 가능한 강사, 기관 또는 돌봄관련 자원활동가
  - 대학생, 청소년 동아리 활동, 어린이 도서연구회, 지자체 파견 문화예술 강사, 시니어클럽과 연계한 어르신 활동가, 자원봉사센터의 활동가 등
- 돌봄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체험활동 공간
  - 공연시설(실내 및 야외공연장, 영화스크린 활용가능한 공공시설), 전시시설(국공립, 대상 등의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작은도서관 등 각종 공공도서관, 자료관(예술·문학·향토 등 자료관, 사료관, 기념관 등), 전시·체험관(과학·유적·생태 등 전시관 및 체험관 등), 공·농·유적지,
  - 지역문화시설(구민회관/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등), 청소년 수련관
  - 마을사업시설(마을예술창작소, 마을북카페 등)
  - 여가시설(휴양림, 각종공원, 동물원 등),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실내외 경기장),

### 나) 돌봄공동체의 다양한 돌봄 공간 유형

- 독립적인 공간
  - 돌봄주체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공간 또는 지자체나 유관기관에서 무상 제공한 공간
  - 기후 등 외부적인 요인에 관계없이 안정적 돌봄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입출입이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
- 돌봄 활동이 있을 때만 임대(별도의 공간 운영 주체 있음)
  - 공공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등의 유휴공간이나 공동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
  - 공간 운영 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동일 공간을 여러 그룹이 나눠서 사용할 경우 공유할 만한 운영 규칙 필요

- 돌봄주체 가정 공간 활용
  - 돌봄주체들의 가정을 순회하거나 정해진 가정에서 돌봄 활동
  - 돌봄공동체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돌봄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개별 가정 내에서 돌봄활동이 지속될 경우 개방성을 저해할 요인이 없는지 유의 필요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 공동육아나눔터 자체 프로그램, 품앗이 모임 등으로 충분한 돌봄활동이 가능한지 확인
  - 돌봄주체들의 적극적 활동보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실무자 중심,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봄활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
- 특별한 공간을 정하지 않고 야외 활동 위주의 돌봄
  - 놀이터, 공원, 숲 등에서 야외활동 위주의 돌봄으로 지정된 공간이 없는 경우
  - 일기의 변화 등이 있을 경우 돌봄활동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확인 필요하며, 야외 활동으로 인한 돌봄주체의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는지도 확인 필요

돌봄공동체의 돌봄 공간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공동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해 안정적 돌봄공간을 확보는 것은 중요하나 공간이 돌봄공동체 활동의 전제 조건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활동을 내용에 따라 야외 공간만으로도 가능한 공동체도 있음.</li> </ul> </li> <li>■ 공간이 안정적이지 않은 돌봄공동체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은 아니지만, 지역 유휴 공간을 함께 탐색하고 유관기관과 연계를 위한 노력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돌봄공간 지도를 작성해보는 것 필요</li> </ul> </li> <li>■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의 관리를 준용하여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돌봄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li> </ul>

- 실내 공간에서 활동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사항에 유의할 필요

돌봄 공간 안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출입문에 문틈 안전대, 창문열림방지용 창문잠금장치(2층 이상), 모서리 보호대, 소화기, 재난 대피안내도 권장</li> <li>■ 위생 관리를 위해 손소독제, 청소기, 비상약품, 온습도계 등을 비치할 것을 권장</li> <li>■ 아동의 출입 관리가 가능하도록 평소에는 하나의 입구로 출입하여 출입 관리하고 공간의 입구가 도로와 인접하거나 주차장이 인접한 경우 특히 출입 관리에 유의할 필요</li> <li>■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입구 소독 권장</li> </ul>

- ※ 외부활동 필수품으로 비상약품,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사전에 금지사항에 대한 공유를 포함하여 아동들의 안전한 활동에 대한 충분한 교육 실시

## 2) 지역사회 공동체 분석

### 가)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공동체 사업 점검

- 관내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공동체 발굴에 활용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III-4> 중앙부처 지원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사업명(지원부처)	공동체 활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행정안전부)	■ 읍·면·동의 기능을 혁신하여 주민자치제도를 기반으로 주민 관점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정안전부)	■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 사업을 함으로써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주민자치회시범사업 (행정안전부)	■ 생활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지역복지형, 안전마을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평생교육형, 지역자원형, 다문화어울림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교통부)	■ 주민, 기업, 지자체 등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주민 주도의 종합 도시재생 목적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여 공동체 문화 회복 및 지역 활성화
관광두레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 상품화하여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이 밖에 광역지자체나 시군구 자체에서 추진되는 공동체 지원사업 또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다면 지자체 협조를 통해 다양한 명칭으로 활동하는 주민자치조직을 파악
- 지자체 단위에서 공동체 지원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은 생협, 협동조합, 자원봉사모임, 작은 도서관, 학교내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자원을 파악

### 나) 돌봄공동체 발굴

#### (1) 지자체 연계 또는 추천

-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었거나 위의 <표> 중앙부처 지원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자체 협조를 통해서 공동체 명단을 확보하고 참여 의사 타진함.
- 지자체 협조 시 마을 공동체 관련 사업담당부서는 가족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 다를 수 있으므로, 가족센터 업무 담당자가 공동체 부서로부터 공동체 명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공유하고 협조 요청
- 시군구 내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자치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참여센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등 각종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있다면 중간지원조직을 관할하는 부서와 연계하여 공동체 명단 확보
  - 학교에 학부모들의 자발적 모임이 있는지 교육청 또는 지자체 교육지원과에 확인하고 교내에서 돌봄활동이나 놀이활동을 하는 모임이 있다면 명단 확보
  - 명단이 확보된 공동체(모임)에 우선으로 사업에 대해 설명하거나 방문하여 면담하는 등으로 기존 활동 내용이 돌봄공동체와의 연계성이 있는지 확인 후 참여 의사 타진

###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는 돌봄공동체 발굴 시 유의사항

- 돌봄공동체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외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
  - 돌봄공동체가 여러 개의 공모사업을 병행 추진할 역량과 의지가 충분한 지 확인이 필요
  - 다른 공모사업들과 ‘돌봄공동체’ 사업의 다른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 예를 들어, 돌봄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지급 없음(다른 공모사업 인건비 조항을 사례로 돌봄공동체 사업의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근거), 자연스러운 놀이활동 권장, 돌봄주체 모두 돌봄활동 참여 등
-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돌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범위 특정화 할 필요
  - 여러 공모 사업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의 내용과 예산이 혼용되거나 중복 사용 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즉 각각의 공모사업 및 ‘돌봄공동체’ 사업 모두 독립적인 사업을 유지하도록 안내 필요
  - 사업에서 중복지원’ 하지 않도록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거나 프로그램을 특정화 함. 예를 들면, 야간이나 주말 등의 틈새돌봄 사업을 추가 발굴하거나 일상돌봄 시간 중 저녁시간을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 (2) 지역사회에서 발굴

- 마을의 작은 도서관, 공동주택의 주민 모임, 공공 도서관 내의 주민 모임, 평생학습 활동가 모임, 생협과 협동조합 등 공동체 활동을 하는 그룹이 있다면 해당 모임의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과 돌봄활동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고 참여 의사 타진

#### (3) 센터 내 기존 활동 품앗이에서 발굴

- 공동육아나눔터의 자녀돌봄품앗이 또는 센터 내 모두가족품앗이 팀에 돌봄공동체 사업 안내 및 공동체 활동 전환 의사 타진

- 전체 품앗이 모임 등을 통해 돌봄공동체 활동을 소개하거나, 활동이 우수한 품앗이에 대한 개별 의사 타진 및 권유
- 품앗이 팀에서 돌봄공동체를 발굴할 때에는 체험활동을 주로 하는 그룹보다는 주 1회 이상 정기 돌봄이 안정화되어 있고 부모 중심의 돌봄이 진행되는 그룹을 우선적으로 발굴. 48개월 이하의 영유아 아동 위주로 구성된 품앗이는 아동의 컨디션이나 계절 등의 요인으로 정기적 돌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돌봄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발굴
- ※ 센터 내 기존 활동 품앗이에서 돌봄공동체 발굴은 센터와의 관계 형성이 용이하고, 돌봄공동체 사업의 성과가 센터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동시에, 품앗이 활동에서 공동체 활동으로 돌봄공동체 활동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는 바, 공동체의 성장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과 노력이 투여될 수 있음.

## 다. 돌봄공동체 선발

### 1) 모집 공고와 사업설명회

- 돌봄공동체 모집 공고는 응모자격, 선정기준 및 혜택, 서류 및 접수방법 안내, 문의처와 사업설명회 일정, 결과발표 일정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와 센터 SNS에 게시
  - 시군구, 가족센터, 돌봄공동체 홈페이지(<https://www.dolbomnetwork.kr/>)
  - 가족센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 지역에서 발굴한 공동체는 센터 SNS 등을 통해 별도 관리함.



마을이 함께 키워요  
**2022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안내**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요즘동안 >커>려왔어...

**공모내용**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돌봄을 책임지는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 공모내용

마을이 함께 키워요~!

<b>접수기간</b>	*접수기한 연장 2021년 10월 11일(월)부터 ~ 10월 19일(화)까지
<b>신청자격</b>	돌봄 주체자 5인 이상(돌봄아동 8인 이상) 및 비영리단체
<b>사업기간</b>	2022년 1월~12월
<b>사업지원</b>	공동체당 700-800만원 (교구교재별도지원) <small>*공동체구성, 활동 내용, 돌봄 아동수 등 고려하여 책정</small>
<b>지원내용</b>	돌봄(상시, 특새, 긴급) 활동 및 문화, 체험프로그램비 등
<b>접수방법</b>	이메일접수(dj9989@hanmail.net)
<b>문의전화</b>	가족친화팀 최선경 042-252-9989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료> 대전광역시가족센터

- 돌봄공동체 사업 신청서는 별첨 [서식 4]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사업 신청서 참조
  -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사업 신청서는 돌봄공동체 활동계획서와 모임소개서로 구성되어 있음.
- 돌봄공동체 모집 공고 이후 2주 이내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권장함.
  - 사업설명회는 돌봄공동체 사업담당자 주관으로 추진하며, 돌봄공동체 정의와 사업 안내, Q&A를 포함하여 추진
  - 우수사례로 선정된 돌봄공동체를 초청하여 사례발표하는 것도 포함 가능함.
  - 사업설명회에서 발표했던 사업설명 자료는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모집 공고 게재한 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함.

## 2) 선정위원회의 구성

- 돌봄공동체의 활동 여건을 판단하고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하는 것을 권장
- 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4~5명 정도의 내외 인사로 구성할 수 있음.
  - 구성: 센터장과 시군구 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 돌봄 전문가 포함.
    - ※ 선정위원회 간사는 돌봄공동체 사업담당자가 담당함.
    - ※ 신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다면 운영위원회 등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단, 센터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지양함.
- 선정위원회의 역할은 다음을 포함함.
  - 돌봄공동체의 활동 여건 진단과 지원 여부
  - 다수의 공동체가 참여한 경우 공동체별 사업 추진 계획을 반영한 지원 금액
  - 돌봄공동체의 지원 중단(계획과 다른 활동, 부실한 돌봄 활동, 아동의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아동 인권이 침해되는 활동, 예산 사용의 불투명성 등)
  - 우수 돌봄공동체 선정
  - 기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결정이 필요한 사안

## 3) 돌봄공동체 발굴 및 선정에서 주의사항

### 가) 돌봄공동체의 발굴에서 주의사항

- 다양한 형식의 공동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
  - 지자체의 추천으로 충분한 돌봄공동체가 확보되더라도 지역사회 내의 다른 공동체들이 있는지 추가적인 확인 필요
  - 공동체 발굴에서 기존에 활동을 하던 공동체만 고집할 필요는 없음. 활동이 이미 정례화된 공동체는 활동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공동체의 돌봄활동이나 의사결정 구조, 주체들의 활동 방식이 돌봄공동체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성에 부합하지



- 않을 수도 있으며 조율에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음.
- 돌봄주체들의 의지와 돌봄부모들의 참여 정도, 돌봄아동의 수, 돌봄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굴

나) 돌봄공동체 선정 시 확인 사항

- 돌봄공동체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동 방향의 일치성 및 목적의 부합성
- 돌봄공동체 구성현황이 돌봄공동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돌봄공동체 사업 참여에 대한 돌봄주체들의 동의 및 공감대 정도
-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돌봄주체간 정기적으로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구조가 있는지 확인
- 돌봄공동체 주체들의 의지와 참여 정도. 특히, 돌봄활동을 돌봄 주체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할 계획인지 확인
  - 강사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상돌봄을 구성하는 것은 지양할 사항
  -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는 돌봄교사로 일상돌봄이 이뤄지는 것도 지양할 사항
- 일상돌봄 및 긴급돌봄에 대한 계획
- 돌봄 공간 : 공동체 자체 공간의 확보하라는 의미보다 지속적으로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
  - ※ 공간이 없지만 숲체험 활동, 놀이터 놀이활동처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돌봄이 상시적으로 진행되거나 가정별로 순회 돌봄, 도서관 이용 등으로 일상돌봄이 지속되고 있다면 돌봄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4) 돌봄공동체 선정기준표 활용

- 돌봄공동체 선정에서는 다음의 선정기준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배점이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선정위원회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음.

<표 III-5> 돌봄공동체 선정기준표(예시)

구분		평가요소	배점	점수
정량 평가 (40)	돌봄공동체 구성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주체 5인, (만 0세~만 12세) 아동 8명 이상</li> <li>■ 가족관계(4촌이내)로 구성된 구성원 50% 이하</li> </ul>	20	
	일상돌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2회 이상 일상돌봄 추진 계획 수립</li> <li>* 농산어촌형의 경우 주 1회 이상(또는 최소 50일 이상)</li> <li>■ 긴급돌봄 계획 수립</li> </ul>	20	
정성 평가 (55)	돌봄활동 수행계획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돌봄 의의 이해도</li> <li>■ 돌봄주체의 고른 참여</li> <li>■ 돌봄 프로그램 운영계획 적정성(구성, 횟</li> </ul>	30	

		수)과 구체성 ■ 연중 운영 계획 수립 여부		
	돌봄공동체 운영계획 적절성	■ 돌봄주체자 회의 운영계획 수립여부 ■ 돌봄주체자 역량강화 활동 계획 구체성	20	
	돌봄공동체 발전가능성	■ 돌봄공동체 확산 가능성 ■ 사후 자발적 돌봄 활동 유지 계획 구체성	5	
예산 평가 (10)	제안예산	■ 예산 지출 준수	10	
가산점 (10)	구성원 현황	■ 다양한 가족(맞벌이,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참여 ■ 돌봄주체자의 자녀 외 아동의 돌봄 참여 ■ 자녀 미동반 돌봄주체자 참여 ■ 돌봄주체자가 10명 이상 ■ 돌봄 아동수가 10명 이상	5	
	돌봄활동	■ 기본돌봄 주 3회 이상 운영 계획	5	
총점			110	

## 라. 돌봄공동체 지원

### 1) 행정 등의 업무지원

- 사업비 관리와 집행 기준, 회계 및 행정처리 방식 등
  - ※ 공동체 대표와 회계담당자 대상 e-나라도움 교육 지원
- 돌봄공동체 예산 지원('23년 예산 기준)
  - 돌봄공동체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동체별로 연 평균 5~6백만원 규모로 지원가능(최대 8백만원 이내)하며 동일 공동체에 대하여 단년도(1년 이내) 지원 원칙
  - 예산액은 돌봄공동체의 규모와 활동량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 등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함.
  - ※ 지원금액은 지자체 · 공동체와 협의를 통해 분할지급
  - 돌봄공동체에 예산을 지원한 경우, 돌봄공동체 예산집행에 대한 주기적 지원 및 점검 필요(매주)
  - 예산 지원 사업이 종료된 돌봄공동체는 센터 운영 프로그램 또는 네트워크 활동 등에서 지속 지원과 연계 가능
- 돌봄공동체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 돌봄공동체의 활동 중단이 지속되거나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등이 확인되는 경우, 개선요청 및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한 후 선정위원회 등을 통한 활동 지원 중단 여부 결정 가능(상세내용 38쪽 6. 사업 예산 참조)

## 2) 돌봄활동 및 돌봄공동체 운영 지원

- 돌봄공동체 사업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돌봄공동체 방문 권장
  - 돌봄 주체와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하고 지원 계획 수립
  - 수립된 사업 계획에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 실적 및 성과 관련 보고 사항 점검
  - 홍보 추진 방향 협의와 홍보처 연계
-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적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함.
  -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목적과 방향 공유

돌봄공동체 운영 사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성) 돌봄공동체는 주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되며, 돌봄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함.</li> <li>■ (상호성) 돌봄공동체의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 상호 지원하고 서로를 환대함. 돌봄공동체는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정보와 자원 등을 상호 지원함.</li> <li>■ (공공성) 장기적으로 돌봄을 매개로 마을문제를 함께 발굴하고 해결하는 공동체 활동을 만들어감.</li> </ul>

- 주된 돌봄 장소의 안전관리 방안 공유
  - ※ 안전 점검 가이드는 공동육아나눔터 가이드 활용

<표 III-6> 돌봄공간 안전 점검표

구분	평가요소	점검	
		양호	개선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전화번호 및 비상연락망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li> <li>■ 대피를 위한 대피도가 잘 관리되어 있는가?</li> <li>■ 피난유도등, 유도표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는가?</li> </ul>		
실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과 창문 등의 추락 위험은 없는가?(창문, 방충망의 상태는 안전한가?)</li> <li>■ 바닥에는 다칠 수 있거나 미끄러운 곳이 없는가?</li> <li>■ 돌출되거나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는가?</li> <li>■ 모든 비품의 고정 상태는 안전한가?</li> <li>■ 화기 주변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용방법도 표시되어 있는가?</li> <li>■ 화재나 가스경보기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li> <li>■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보호되어 있는가?</li> </ul>		

출처 : 다함께 돌봄 일별점검표 활용

- 일상돌봄 운영의 적정성(돌봄주체자의 돌봄 운영 권장, 강사활용 프로그램의 적정비용 점검 및 제안), 긴급돌봄의 적절한 추진
  - 프로그램 형태보다는 공동체 돌봄 활동이 중심이 되는 방식 권장. 필요시 우수 돌봄 프로그램, 돌봄공동체 활동 가능한 공간, 지역사회 문화활동 정보 등 지역사회 환경 분석을 통해 확보한 자료 공유
- 돌봄주체간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 돌봄주체자 간 고른 역할 분담 유도
  - 돌봄공동체 내에서 돌봄활동의 계획과 실행 등을 정기적인 내부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업담당자도 필요시 참여
- 돌봄공동체 운영사례 및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 ※ 운영 규정은 본문 32쪽 참조
  - ※ 돌봄공동체 운영사례는 우수사례집 참조

<b>돌봄공동체 연차별 지원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1차 년도 ] : 돌봄 주체 간 공동체 활동 방향과 목표 공유와 돌봄 활동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활동 기본 정보 제공 : 안전한 돌봄을 위한 공간 활용 및 아동과 소통 및 돌봄 방법, 교육과 휴식, 체험, 놀이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돌봄 활동의 사례 제공</li> <li>- 돌봄공동체 사업 안내 : 돌봄공동체 사업의 취지, 연간 계획, 세부 사업의 기획 의도 등</li> <li>- 가족센터의 역할 안내 : 가족센터의 사업 소개, 돌봄공동체 사업에서 센터의 역할, 돌봄 공동체와 가족센터와의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 등</li> <li>- 행정적 지원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회계교육 및 사업 계획 수립과 진행의 절차적 안내</li> <li>- 돌봄주체 역량 강화 교육</li> </ul> </li> <li>※ 다른 공모사업 추진해 오던 공동체일 경우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 필요. 센터에서도 기존 공동체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력, 조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 선행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2차 년도 ] : 공동체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공동체 운영 및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이 구조화될 수 있도록 지원 주체들의 돌봄 역량 강화</li> <li>- 돌봄 주체들의 돌봄 역량 강화</li> <li>- 우수사례 공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3차 년도 ] : 공동체의 확장성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아동 및 돌봄 주체들의 확대를 위한 방안 지원</li> <li>- 지역 네트워크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li> <li>- 우수사례 발굴</li> </ul> </li> </ul>

### 3) 돌봄주체 역량 강화

- 돌봄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은 자립적으로 지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폭넓게 지원하  
는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필요
- 한가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이외에 개별 돌봄공동체 돌봄 주체들에게 필요한 교육 계획  
수립 지원
- ※ 돌봄공동체 지원사업비로 돌봄주체들에게 필요한 자체 역량강화교육 진행 가능

<표 III-7> 돌봄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교육(안)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이해</li> <li>■ 회계와 행정 실무 교육</li> <li>■ 마을과 돌봄공동체 활동 간 상호작용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워크숍</li> <li>■ [심화] 우수 돌봄공동체 탐방 또는 우수 돌봄공동체 초청 간담회</li> </ul>	한가원 교육과 병행 가능
공동체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공동체의 운영 및 활동 이해</li> <li>■ 소통 역량 강화 및 갈등 해결 위한 비폭력대화(평화적 소통) 워크숍</li> <li>■ 민주적 회의문화 워크숍</li> <li>■ 구성원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MBTI, 애니어그램 활용 집단 상담</li> <li>■ [심화]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관련 이해</li> </ul>	한가원 교육과 병행 가능
돌봄공동체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교육 및 성교육</li> <li>■ 기후 위기 및 제로 웨이스트 등 환경 관련 교육</li> <li>■ 생태 (나들이) 및 텃밭, 먹거리 교육</li> <li>■ 책 및 책 활동 교육 등</li> <li>■ [심화] 놀이 교육</li> </ul>	

-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가족센터 역량 및 인적자원과 먼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돌봄공동체의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 단, 내부 자원 부재 시 외부 자원 및 콘텐츠 연결하여 활용
- 돌봄공동체 사업추진 방향과 평가 등 의견 교류하는 돌봄공동체와 사업운영기관의 정기적 회의 통해서도 역량 강화 지원

### 돌봄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향

-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돌봄공동체의 고유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방향을 지향함.
    - 돌봄공동체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 돌봄공동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 돌봄공동체의 질적 성장(구성원과 집단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 돌봄공동체의 자립 및 지속을 위해
  - 따라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시 실무적인 직업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체 필요
    - 직업 역량을 위한 교육은 일자리 전담 기관의 전문 교육 참여가 적정
    - 직업 역량 교육은 돌봄공동체 활동의 직접적 목적이 될 수 없음.
- ※ 직업적 역량은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속한 결과로 성취될 수 있는 역량임.

#### 4)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 사업담당자는 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과 참여 및 정보공유를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추진
- 돌봄공동체가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모임을 운영. 모임 형태는 교육·회의·간담회·워크숍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하며, 적어도 연 2회 이상은 돌봄공동체 전체가 모일 수 있는 형태로 모임을 운영함.
  - 참여자 : 돌봄공동체 대표 또는 구성원, 가족품앗이 활동가,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 등
  - 내용 : 돌봄공동체 운영 관련 강의와 토론, 돌봄공동체 활동 사례 발표 등

###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활동 예시

- (사업설명회) 선정된 돌봄공동체 대상 사업 취지, 회계, 행정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돌봄공동체 상호 소개
- (역량강화교육) 공동체 교육, 사업 사례 등 돌봄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 (사례발표회) 참여 공동체 활동 사례 발표, 타지역 우수한 활동 사례 방문 및 탐방
- (간담회) 돌봄공동체와 사업운영기관과 정기적 회의
- (마을활동) 돌봄공동체 전체 구성원(돌봄주체, 아동 등)이 참여하는 축제, 체육대회 등(이웃초청 가능)
- (성과보고회) 돌봄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구성원들과 공유
- (지역특화사업) 위의 예시 이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타 활동

- ※ 지원이 종료된 졸업 공동체도 참여 가능하며, 가족센터 내 공동체 활동 그룹이 소수일 경우, 인접 지역 가족센터와 공동모임 가능함.
- ※ 졸업 공동체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업담당자와 돌봄공동체 대표들이 공동 기획하며, 3년차 이후부터는 졸업 공동체 중심으로 공동체 협의체 구성하여 자율 기획
- ※ 가족센터장, 지자체 담당부서 등 사업 관계자의 참여 권장

## 마. 연계 활동

### 1) 센터 내 사업 연계

- 가족품앗이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과 인적·공간적 자원의 연계
- 돌봄공동체 선발, 운영실적 등에 대해 팀 내에서 공유
  - ※ 연 1회 한가원에서 운영하는 돌봄공동체 사업 운영기관 센터장 간담회 참석

### 2)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 관내 돌봄 기관과 연 1회 이상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모임 추진을 권장함.
  - 대상: 영유아, 취학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기관장, 유관기관장\*, 가족센터장, 돌봄공동체 사업담당
  - 내용: 지역사회 내 돌봄 자원·기술·정보 공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기관 간 연계 방안 등
    - ※ 지역 내 기관 간 유대 정도에 따라 간담회, 워크숍, 포럼, 협의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가능. 참여 기관이 매년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포럼이나 협의체 구성 시 별도의 실무자 그룹 활동도 고려할 필요성 있음.
    - ※ 기 형성된 돌봄 네트워크 및 협의체가 있다면 기존의 협의체에 돌봄공동체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여 대체 가능

돌봄공동체 사업 유관기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돌봄관련 기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학교 등</li> <li>■ (아동문화·정서지원기관) 아동심리상담센터, 마을도서관, 어린이도서연구회, 아동대상 바우처기관 등</li> <li>■ (의료지원기관) 보건소, 병원, 치과, 약국 등</li> <li>■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상담기관, 평생교육시설 등</li> </ul>

## 바. 홍보

- 돌봄공동체 활동 사례 월 1회 이상 홍보
  - 내용: 돌봄공동체 기본돌봄, 긴급돌봄 사례 소개, 돌봄주체자의 돌봄공동체 활동에서 역할 소개,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후기 등
  - 홍보처: 시군구, 가족센터, 돌봄공동체 홈페이지(<https://www.dolbomnetwork.kr/>)
  - 가족센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돌봄공동체 우수사례 및 성과 연 1회 이상 홍보
  - 지역 언론 대상 보도자료 배포

## 사. 실적 점검

### 1) 월별 실적 점검

- 매월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수합하여 보고

### 2) 성과 점검

- 연말에 돌봄공동체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통해서 계획된 목표를 얼마만큼 성취하였는지, 사업추진을 통해서 돌봄공동체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을 적절히 달성했는지 점검하고 평가함.
- 성과 점검은 <[서식 3-1] 00년 돌봄공동체 사업 성과보고서(운영기관 작성용)>을 작성하여 보고함.

※ 상세내용은 P. 36 [5. 실적 관리] 부분 참조.

## 3. 돌봄공동체 주요 업무

### 가. 돌봄공동체 구성

- 돌봄공동체 최소 구성원은 적어도 주 2회 이상 일상적인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성인 돌봄주체자(양육자, 마을 주민 등)와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임.

돌봄공동체 구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5명 이상의 성인 돌봄 주체자와 8명 이상의 아동(만 0세 ~ 만 12세 이하)으로 구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인돌봄 주체자는 양육자일 수도 있고, 양육하지 않는 이웃 주민일 수도 있음.</li><li>- 아동도 돌봄공동체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아동들이 즐겁게 지내야 돌봄공동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특히 초등 아동의 경우 원하는 놀이나 나들이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형성해갈 필요 있음.</li></ul></li><li>■ 최소 주 2회 이상 꾸준한 상호 돌봄 활동 추진</li><li>■ 공동체 특성에 따라 거점공간에서 활동하거나, 공동육아나눔터, 마을 카페, 마을 농장, 작은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희 공간, 체험학습장 등 근거리 공공장소를 활용</li></ul>

-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유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주 2회 이상 일상돌봄'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돌봄활동을 하는 공동체도 가능함.
  - 시범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지만, 더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동체도 참여 가능함.



- 아동의 주양육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품앗이형’ 돌봄공동체
  -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부모 등 양육자의 자조 모임 및 품앗이 그룹. 양육당사자로 구성된다는 특성이 있어서, 참여자의 동등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특성을 담보하기에 좋음.
  - 당사자들의 멤버십에 국한되지 않는 개방성과 확장성을 갖춘다면 공동체 활동 활성화 될 수 있음.
- 아동의 주양육자 이외의 주민들로 구성된 부녀회·입주자대표회 등 공동체가 함께 돌봄 사업을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돌봄
  - 마을카페, 마을밥상, 공유부엌, 작은도서관, 제로웨이스트 가게 등 커뮤니티 공간에서 돌봄을 하는 경우가 많아 돌봄공동체 형성에 유리한 조건임. 거점 공간이 있고, 양육당사자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이 함께 활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음.
  - 마을 주민이 돌봄공동체의 주도적 주체가 될 때는 양육자들이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돌봄 활동도 수행하기 때문에 공간활용과 관련된 의견의 차이가 생길 경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고, 오랫동안 만들어진 마을공동체 활동 방식이 센터의 사업 규정이나 관리 방식과 새롭게 관계 맺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음. 다수의 마을공동체 경험이 있을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과 돌봄공동체 사업을 혼동하기 쉬워 사업 안내 및 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함.
- 아동의 주양육자가 참여하지 않은 이웃 주민들 또는 그 밖의 구성원도 포함된 비영리 법인·단체(사회적협동조합 포함)가 마을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공동체’ 돌봄
  -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고, 아동의 주양육자의 참여를 촉진·활동 멤버십을 강화하고 마을의 모든 ‘어른’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체라면 활동 역량이 높을 가능성이 큼.
  - 마을 활동을 통해 ‘직업적 성장’을 원하는 구성원들이 많아질 경우 마을에서 아이 돌봄이 당사자성과 주민참여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자율적 조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조력자로서 센터 역할 필요

**당사자성과 공동체성이 있다면 어떤 형태든 참여 가능**

- 위의 유형 구분은 엄밀한 개념적 구분이라기보다는 편의적 구분이니 지나치게 엄매일 필요는 없음. 공동체에 따라 하나의 유형 특성뿐 아니라 두 유형의 특성, 세 유형의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으며, 돌봄공동체는 당사자성과 공동체성을 유연하게 보유할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들은 참여 당시와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 및 발전할 수 있으니, 센터는 돌봄공동체가 정형화된 형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성장해갈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음.

## 나. 돌봄활동

- 돌봄공동체는 공동체 특성에 따라서 거점공간에서 활동하거나, 공동육아나눔터,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아파트 유휴 공간 등 근거리 공공장소를 활용하여 주 2회 이상 꾸준히 일상돌봄 활동 추진

<표 III-8> 돌봄공동체 돌봄 활동 구분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공동체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주체가 아동과 안전하게 함께하는 활동 일체</li> <li>- 일상돌봄 : 당초부터 계획하게 진행되는 돌봄</li> <li>- 긴급돌봄 : 계획에 없었으나 긴급 수요로 진행되는 돌봄</li> </ul>	
프로그램 활용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돌봄 중 일부의 시간을 활용하여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동</li> </ul>	· 돌봄주체 강사활동 가능

### 1) 공동체 돌봄

- 공동체 돌봄은 돌봄 주체들이 아동과 안전하게 함께하는 활동 일체를 의미함.
  - 신체 활동이나 책읽기를 주된 돌봄 활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차원에서 성인 돌봄 주체의 보호 하에 ‘특별한 활동’ 없이 개별 활동을 보장하는 것도 가능

#### (1) 일상돌봄

- 돌봄수요는 공동체별로 다양하므로 돌봄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시간대, 시기를 정하여 사전에 계획하여 활동하는 모든 돌봄은 일상돌봄임.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돌봄계획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A: 평일 기본돌봄을 중심으로 돌봄활동을 함.</li> <li>- 평일 15:00~18:00, 주 4일 기본돌봄 계획. 즉, 주 4일 3시간 정도의 안전한 돌봄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임.</li> <li>※ 시간표대로 꼭 준수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 구분도 불필요 즉, 요일에 따라 자유놀이가 90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음. 또한 월요일에 책읽기를 안할 수도 있고, 수요일에 나들이를 안 할 수도 있음.</li> </ul>				
구분	월	화	수	금
15:00 ~18:00	자유놀이	자유놀이	동네나들이	간식
	간식	간식		신체놀이
	책읽기	보드게임		

- 공동체 B: 평일 기본돌봄 하고, 격주로 토요일에 야외활동 중심의 기본돌봄
  - 평일 16:00~18:00, 주 3일 기본돌봄과 격주 토요일 기본돌봄 계획. 주 3일 2시간 정도와 격주 토요일에 돌봄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임

구분	월	수	금	구분	토요일
16:00 ~18:00	간식	신체 놀이	간식	14:00~18:00	1주 자전거
	자유 놀이		자유 놀이		3주 나들이

- 공동체 C: 평일 기본돌봄이 중심이나, 주 1회 돌봄프로그램 운영

구분	월	수	금
16:00~19:30	숙제하기	00프로그램	숙제하기
	저녁		저녁
	보드게임	저녁	동아리 활동

(2) 긴급돌봄

- 각 돌봄공동체에서 계획한 돌봄 외의 돌봄 수요가 발생한 경우 돌봄공동체가 계획에 없던 긴급돌봄 요구에 대처한 경우는 긴급돌봄임.
- 계획에 없던 긴급돌봄에 대해 모든 돌봄공동체가 반드시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긴급돌봄 수요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음. 따라서, 긴급돌봄의 요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돌봄 공백을 해결할지에 대해서 돌봄주체 간 협의 필요
- ※ 돌봄공동체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획에 없던 긴급돌봄이 발생했을 때 돌봄공동체 안에서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협의를 하면 좋지만, 돌봄공동체 활동 진행 과정 중에 협의를 해도 무방. 긴급돌봄 수요에 대해 돌봄공동체 안에서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대처한 경우는 중요한 돌봄 활동 실적이라는 점을 공유하는 것 필요

## 계획에 없던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다양한 대처 방안

- 공동체 A 긴급돌봄 대처 방안
  - ① 2시간 이내 돌봄 필요 시, 돌봄공동체 A의 단체톡방(밴드, 다른 소통채널 등)에 돌봄 요청
  - ② 2시간 이상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공동체 구성원에게 개별 통화로 추가 돌봄 요청
  - ③ 모든 돌봄공동체 구성원은 부담 없이 추가 돌봄 요청에 대해 거절할 수 있음.
- 공동체 B 계획에 없는 돌봄 발생 시 대처 방안
  - 매월 긴급돌봄 담당가구 지정(2가구씩)
  - 긴급돌봄 담당가구 내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단톡방에서 논의하여 일시적으로 해결
- 공동체 C 계획에 없는 돌봄 발생 시 대처 방안
  - 매월 공동체 회의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가구 파악(출장, 휴교 등)
  - 회의 시간에 추가 돌봄 가능한 가구 확인해서 매칭. 없는 경우 해당 가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 그 외의 추가 돌봄은 단톡방에서 논의하여 일시적으로 해결

## 2) 프로그램 활용 돌봄

- 활동 시작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활동 내용도 미리 결정되어 있는 활동으로, 일상돌봄 중 일부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동
  - 돌봄주체 중 일부가 프로그램을 주관할 수도 있고, 외부 강사를 활용할 수도 있음.

### 탄력적인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은 회기에 따라 단회기 프로그램과 다회기(2회 이상)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회기별 최소 운영시간 기준은 없으나 회기별 활동 내용이 서로 구분되어야 함
  - 돌봄공동체 상황에 맞게 돌봄 프로그램 참여 아동 연령과 인원에 따라, 회기별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동 가능
  - 예) 1회기 40분, 2회기 60분, 3회기 30분 등 회기별 운영 시간을 달리 편성 가능
  - 예) 1회기 6명, 2회기 8명, 3회기 5명 등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참여 인원 조정 가능

### (1) 돌봄주체자 주관 돌봄 프로그램

- 돌봄주체자가 돌봄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돌봄 프로그램의 준비와 진행을 맡아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
  - 다만, 특정한 돌봄주체자가 돌봄 프로그램을 전담하다시피 주관하는 것은 지양
  - 특정 분야에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돌봄주체자가 있다면 다른 돌봄주체자들이 돌봄 프

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과교육을 하거나 준비과정에서 다른 돌봄주체자들과 역할 분담하는 방식을 권장

- 돌봄주체자가 진행하는 돌봄 프로그램은 구조화된 프로그램(프로그램 목적, 추진방법, 세부 일정 등이 포함된 계획 하에 진행)이 아닌 비구조화된 프로그램(프로그램 주제는 설정하되 활동은 자유)이어도 무방
- 돌봄공동체는 전문기관이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점을 감안하여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초 계획과 프로그램 내용이 일정 수준 변경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봄.

예) 매주 수요일 오후는 신체놀이 프로그램으로 설정. 제기차기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준비했으나 아동들의 호응 정도에 따라 제기차기로만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

※ 돌봄활동에서 돌봄 주체자의 역할

- 돌봄주체자는 돌봄 여건이나 공간 또는 장소에 따라 형태는 다르지만, 돌봄아동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함.

**돌봄주체자의 돌봄활동**

- 평일 주중 돌봄 활동이 가능한 돌봄주체자 간에 역할을 분담해 돌봄 활동과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
- 맞벌이로 평일 주중 돌봄 활동이 어려운 경우 주말에 돌봄 활동을 할 수도 있음.
- 직접 돌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주된 돌봄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경우 공간 청소, 환경 개선 작업, 돌봄공동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역할(회계, 행정 등)에 참여할 수도 있음.
- 일상돌봄이나 긴급돌봄에 역할을 맡은 경우 돌봄주체자는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것임. 예를 들어, 동네 놀이터에서 돌봄아동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도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것임.

(2) 외부인력을 활용한 돌봄 프로그램

-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 사항을 돌봄공동체 구성원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 전문영역 등에 대해 외부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외부 인력 활용 돌봄 프로그램 구성 시 유의사항**

- 돌봄공동체 사업은 프로그램 형태보다는 일상돌봄 활동이 중심이 되는 방식을 권장하기 때문에, 사업 취지상 가급적 외부인력을 활용한 돌봄 프로그램은 지양
- 외부인력을 활용할 경우 돌봄공동체가 속한 지역의 마을강사, 다른 돌봄공동체의 구성원 등 돌봄공동체와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이 있는 외부인력을 우선 순위로 선정
- ※ 돌봄공동체나 지역사회와 연관성이 없이 단순 전문분야만을 보고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지양

- 그럼에도 외부인력을 활용한 돌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돌봄공동체가 있는 경우 운영 기관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에 그 사유가 충분히 타당한지 검토한 후 검토 의견을 해당 돌봄공동체에게 전달
    - 불가피한 사유(프로그램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 사항을 돌봄공동체 구성원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 전문영역 등)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돌봄공동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외부 인력의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안내하거나 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안내
    - 특히, 돌봄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교육의 일환처럼 학습과 관련된 경우는 돌봄공동체 활동으로 부적절
  - 적절한 외부 전문가 활용 사례
    - 돌봄주체자 주관 돌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과 같은 형태임. 이 경우에는 돌봄주체자 역량강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가능
- 예) 돌봄주체자 3명이 보드게임 진행 방법 강의를 듣고, 프로그램 진행 순서를 정해서 아동들과 보드게임을 통한 돌봄 프로그램 진행

※ 방역지침 등에 따른 비대면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사항

- 방역지침 등에 따라 실내에서의 인원 제한, 주된 돌봄 공간의 휴관으로 전면적인 대면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은 비대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비대면 돌봄 프로그램은 고립감을 줄이고 떨어져 있으나 함께 공동의 활동을 한다는 연대감, 소속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 단순히 개별 가정에 '00키트'를 배포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은 지양. '00키트' 배포 후 연계 활동, 활동 공유와 같은 후속 프로그램 진행이 필수

**비대면 돌봄 프로그램 예시**

- 장난감 제작 키트를 각 구성원에게 배포, 먼저 한 가정에서 키트로 장난감을 만들어 재밌게 노는 영상을 찍어서 다른 구성원에게 공유, 영상을 보고 아이들도 따라 만들고 놀이하는 방식
- 서로 떨어져 있지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한 사례로 마스크 분실 방지 끈을 각 가정에서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고, 추후에 동네 어르신에게 나눔 활동으로 연계
- 음식 재료 키트를 보내주고 각자 음식을 만들어 인증샷을 공유하고 소감을 나누는 비대면 요리 프로그램
- A가구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 A 아동만 대면 활동을 못하는 경우 다른 가구에서 순번을 정해 A가구를 위한 간식을 1일 1회 전달

다. 돌봄공동체 유지활동

1) 돌봄주체자 회의

- 돌봄공동체의 돌봄주체자는 돌봄공동체 운영 주체로서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해야 함.

- 돌봄공동체는 양육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돌봄 계획과 결정, 실행과 진행을 책임지며, 상호 수평적 관계로 대표의 결정에 따르는 구조가 아니라 회의를 통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함.

### 돌봄공동체 구성원간 정기적인 회의 필요성

- 돌봄공동체의 주요 리더들이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양육자들이 단순 ‘소비자’의 역할에 머무른다면 기관형 돌봄<sup>1)</sup>이나 문화센터와 구별되는 돌봄공동체가 될 수 없음.
- 돌봄공동체가 양육자를 비롯한 주민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은 이들이 계획과 결정, 실행과 진행을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함.
- 회의를 통해 주요한 결정에 의견을 행사하고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때 돌봄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음.
- 회의의 기능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데 있음.

#### ○ 회의의 종류와 구성

- 전체 회의: 돌봄공동체 규모가 작을 경우는 ‘전체회의’를 통해 여러 논의와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
- 운영진 회의(운영위원회 등): 규모가 큰 공동체들은 매번 전체회의를 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성원의 일부가 운영진의 역할을 맡고 이들이 참여하는 운영진 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
- 각종 소모임: 운영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 운영을 위해 작은 소모임을 기본 단위로 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모임의 장들이 운영진이 되는 다중적 회의 구조를 가질 수 있음.
- 회의의 종류나 구성은 규모에 따라 결정하되 돌봄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 회의의 정례화

- 회의 구조가 있다면 정기적인 회의 운영을 추천.
- 시기와 횟수: 주 1회, 격주 1회, 월 1회 등 시기와 횟수를 정해 정기회의로 운영함.
- ※ 회의를 ‘번개’로 진행하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음. 여러 구성원이 일시를 맞추기 어려울 경우 리더 및 소수 의견 중심으로 운영이 진행되기 쉬움. 사정이 있을 때 변경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발휘하면 됨.

#### ○ 기록과 공유

- 돌봄공동체 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유를 권장.
- 회의록 작성자: 한 명이 역할을 전담할 수 있고 구성원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며 담당할 수 있음.

1) 기관형 돌봄의 사례로는 학교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들 수 있다.

- 회의록 작성 방법: 회의 참석자, 일시, 장소, 회의 안건, 주요 결정 사항 정도를 간단하게 기록하면 됨.
- 기록의 공유: 회의록 작성 후 구성원들과 공유 필요

돌봄주체자 회의 운영 관련 점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공동체가 구성원 간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회의의 기록을 모으고 공유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필요</li> <li>■ 돌봄공동체가 회의 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면 회의의 종류와 구성 방법을 안내할 수 있으며 회의 구조의 부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 필요</li> <li>■ 운영 과정에서 계획, 진행, 평가의 과정이 순환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li> <li>■ 회의록 작성 및 유통을 위해 돌봄공동체의 밴드, 카페 등을 형성하기를 추천할 수 있음. 온라인 소통망은 구두로 누락되는 논의가 생기지 않음. 논의 기록이 쌓여 논의 내용 확인에 용이함. 공동체의 정보의 교류와 유통, 개방적 의사소통 체계 문화 형성에 유리함. 익년도 사업계획 시 좋은 참고 자료가 됨. 불필요한 소통 과정의 오해를 줄일 수 있음.</li> </ul>

### 3) 돌봄공동체 활동체계 구성

- 돌봄공동체 활동은 돌봄주체자 모두가 역할 분담을 통해 활동 체계와 구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활동체계는 활동의 실행 단계에 대한 역할 분담을 체계화해 놓은 것으로, 역할 분담 및 활동 체계는 돌봄공동체에 따라 자유롭게 나누어 맡을 수 있으며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님.
- 예시1) 대표, 회계 담당, 간식 및 재료 구매 담당, 요리 담당, 사진이나 문서 기록 담당 등을 둘 수 있음.
- 예시2) 운영위원장, 운영 담당, 재정 담당, 공동체 교육 담당, 공간 시설 관리 담당, 홍보 담당 등을 둘 수 있음.

#### [회의 구조와 활동 체계의 차이점]

- 회의 구조가 여러 구성원들이 의견을 내고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돌봄공동체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논의 구조 및 결정 단계를 의미한다면, 활동 체계는 실행 단계에서의 역할 분담을 의미함

- 활동 체계의 구성의 원칙은 다수가 활동 체계와 구조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초보적이다더라도 다수의 구성원이 역할을 분담해 나누어 맡는 것이 필요



### 대표자 개인 리더십 중심 운영의 위험성

- 대표자의 업무가 과중해 피로도가 증가하고 소진되기 쉬움.
- 대표에게 역할 뿐 아니라 권한도 집중되어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해치기 쉬움.
- 대표자가 탈락되면 공동체가 와해되기 쉬워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움.
- 대표자와 참여자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관계로 전락하기 쉬움.
- 공동체의 운영 구조를 형성하기 어려움.
- 특히 대표자가 영리 사업체 및 공간 등을 보유했을 경우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좋음.

#### ○ 역할 분담 또는 활동 체계 구성 방법

-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정해진 규칙은 없음. 각 돌봄공동체의 특성 및 가치 지향 등을 반영해 다수가 참여하는 활동구조와 구성원의 고른 역할 분담이 필요.
- 역할 분담의 필요성: 모두가 업무 부담을 덜게 되어 돌봄공동체 운영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음. 역할과 권한이 분산되며 빠르게 돌봄공동체의 활동 구조와 회의 체계가 수립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구성 방법
  - 각 공동체 구성원들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서 분담하기
  -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역할 맡기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등 어려움이 있는 구성원 배려하기
  - 공동체의 규모 고려하기

### 공동체 규모별 역할 분담 방식 예시

- 5명 내외의 소규모 돌봄공동체의 경우, 전원이 작더라도 역할과 일감을 하나씩 분담하는 방식
-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라면 구성원 중의 반수 정도가 운영진으로 참여하는 방식
- 20~30명 이상인 대규모 공동체는 해마다 역할을 나누어 분담하는 방식이 가능. 해마다 다른 5~7명의 운영진을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 추천

#### ○ 돌봄공동체의 회칙(규정) 등의 제정

- 돌봄공동체가 일정 규모 및 일정 성장 단계에 이르면 명문화된 회칙이나 규정이 필요할 수 있음.
- 회칙(규정)은 돌봄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운영에 대한 약속(회의, 회비 등), 활동에 대한 약속(횟수, 참여 의무 등), 갈등에 대한 대처 방안, 역할 분담 원칙 등을 담을 수 있음.
- 5~10개 조항이면 충분하며 연간 1회 정도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등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길고 복잡해 이해되지도 않고 작은 돌봄공동체에 협동조합의 정관을 적용할 필요는 없음.

돌봄공동체 회칙 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며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li> <li>2. 양육자들도 함께 어울리고 배우며 성장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li> <li>3. 아이들 간의 다툼, 어른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면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 함께 해결을 도모한다.</li> <li>4. 회의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의견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li> <li>5.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하며 1년에 한 번씩 전체 회의를 통해 다음 연도의 회비를 결정한다.</li> <li>6.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책임진다.</li> </ol>

돌봄공동체 운영규정 예시
<p>제1조(목적) 본 규정은 ***** 공동체(이하 “공동체“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공동체는 5-12세의 아동을 양육자 및 마을 주민들이 함께 돌보며 아동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한다.</p> <p>제2조(구성원 자격과 의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돌봄에 아이를 보내는 사람, 공동체에서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회원이 된다.</li> <li>② 공동체의 회원은 총회 및 전체회의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li> <li>③ 공동체의 회원은 1인 1역할을 담당할 의무를 가진다.</li> </ol> <p>제3조(회비) 회원은 월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단, 아이를 보내는 경우는 월 5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p> <p>제4조(돌봄 운영 시간) 학기 중 월, 수, 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방학은 별도의 논의를 거쳐 운영 시간을 결정한다.</p> <p>제5조(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공동체의 사업 전반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며 대표를 선출한다.</li> <li>② 전체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일상적으로 공동체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li> <li>③ 다수결로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li> <li>④ 회의에서는 상호간에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며, 모두가 만족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li> </ol>

#### 다. 돌봄공동체 특화활동

- 돌봄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 돌봄과 관련한 전문 교육 참여나 자격증 취득, 돌봄사회적협동조합 추진과 같은 활동 가능

- 돌봄공동체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을 및 지역 연계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마을 및 지역 연계 활동의 종류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및 지역 자원 연계: 활동 공간 물색, 교육 및 활동 강사 섭외 등</li> <li>■ 마을 및 지역 회의 및 행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의 정보나 자원, 행사 등 파악 가능, 다양한 주민과 단체, 기관 연계 형성 가능</li> </ul> </li> <li>■ 마을 및 지역의 행사(교육, 축제 등) 공동 주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사업 경험 축적, 인적 연계 강화 효과</li> </ul> </li> <li>■ 마을 및 지역 네트워크 형성</li> </ul>

- 돌봄공동체의 특화활동에 대해 센터는 적극적 연결자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돌봄공동체가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모색한다면 센터는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연계해 줄 수 있음.

#### 4. 교육 및 컨설팅단 운영

##### 가. 교육

- 지역 주민, 사업담당자, 돌봄공동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돌봄공동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과정 운영
- 돌봄공동체 사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돌봄주체 대상 기초 과정 이외의 모든 교육과정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운영

<표 III-9> 교육 과정

대상	목표	주요 내용
돌봄 주체 (돌봄공동체)	돌봄 주체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과정: 돌봄공동체 활동 준비 과정</li> <li>■ 기본 과정1: 돌봄공동체 활동 계획수립 과정</li> <li>■ 기본 과정2: 공동체 운영 실천 과정(코칭 연계)</li> <li>■ 심화 과정: 돌봄공동체 활동 확대 과정</li> </ul>
사업담당자 (운영기관)	직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공동체 사업 이해 과정</li> <li>■ 공동체 지원 업무 실무 과정</li> </ul>
기관장 (운영기관)	사업 이해, 발전방향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돌봄과 가족센터 역할</li> </ul>

## 1) 돌봄 주체 대상

### 가) 기초 과정

#### ○ 돌봄공동체 활동 준비 과정

- 대상: 누구나. 주로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센터 사업 참여자 방문자
- 내용: 돌봄공동체 활동을 준비하는 기본 소양
- 방법: 지속가능한 사회와 돌봄은 온라인 교육 가능. 온라인 교육 시 추가 교육자료 제공 및 질의응답 가능 필요
- 과정(안)

과목명	내용	시간
· 지속가능한 사회와 돌봄	· 지속가능 사회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국제조약 등) · 돌봄 위기와 공공 돌봄의 다양한 얼굴	2
· 지역사회 좋은 돌봄 만들기	· 돌봄과 개인, 마을, 사회의 성장(돌봄공동체 사업 이해) · 돌봄공동체 활동 사례	2

### 나) 기본 과정

#### ○ 돌봄공동체 활동 계획수립 과정

- 대상: 공동체 활동 준비자, 가족품앗이 활동 그룹 중 공동체 활동
- 내용: 품앗이 형태 활동에서 열린 공동체 활동 준비. 돌봄공동체 활동 계획수립
- 시간: 16시간
- 방법: 온라인 교육. 워크숍 및 코칭
- 과정(안)

과목명	내용	시간
· 사업 이해	· 돌봄공동체 사업 이해 - ‘주민이 주도’ 하는 공동체 돌봄의 의의	2
· 공동체 돌봄: 관계 맺기	· 돌봄공동체 운영자와 돌봄윤리 · 교육과 돌봄 사이의 ‘위계성’에 대한 성찰 · 돌봄 관계 맺기와 민주성	2
· 공동체 돌봄: 함께 발전하기(1)	· 돌봄공동체 일상돌봄 · 놀이와 공동체 활동	2
· 공동체 돌봄: 함께 발전하기(2)	· 마을에서 돌봄 하기 · 공동체 돌봄과 마을 변화(괜찮은 놀이터 만들기, 무엇 이든 도전할 수 있는 골목 만들기 등)	2
· 돌봄공동체 활동 워크숍(1)	· 돌봄 공동체 활동 연간 계획수립(코칭 연계)	4
· 돌봄공동체 활동 워크숍(2)	· 돌봄 주체자 회의 운영(코칭 연계)	4

○ 공동체 운영 실전 과정(코칭 연계)

- 대상 : 돌봄공동체 활동 참여자
- 내용 : 지역사회 내 돌봄 이슈에 대응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돌봄공동체 의사결정과정 실전 연습(주체자 회의, 활동기획 사례 등)
- 시간 : 16시간
- 방법 : 온라인 교육, 워크숍 및 공동체 마을활동 계획 수립은 코칭
- 과정(안)

과목명	내용	시간
· 사업 이해	· 돌봄공동체 사업 이해	2
· 돌봄공동체 운영 워크숍	· 돌봄공동체 운영 규칙 만들기 - 공동체 활동체계 구성, 공동체 관련 의사소통 - 돌봄공동체의 회칙(규정) 만들기	4
	· 갈등관리 코칭	4
· 열린 돌봄공동체 활동	· 지역사회 돌봄 이슈 파악하기	4
	· 열린 돌봄공동체 활동과 공동체 마을활동 계획 수립(코칭 연계)	2

다) 심화 과정

○ 돌봄공동체 활동 확대 과정

- 대상 : 돌봄공동체 활동 참여자, 돌봄 활동을 계획 중인 주민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및 마을 기반 거점 공간 운영그룹 등
- 내용 : 돌봄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달성하고 돌봄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역 사회 협력 방안, 돌봄공동체의 지속 및 확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방안 등
- 시간 : 24시간
- 방법 : 온라인 교육, 워크숍 및 공동체 마을활동 계획 수립은 코칭
- 과정(안)

분야	과목명	시간
· 사업 이해	· 마을 활동과 연계된 돌봄공동체	2
· 마을돌봄 워크숍	· 마을돌봄자원조사와 자산 발굴	4
	· 마을돌봄의제 도출	4
	· 마을돌봄 의제 실행계획 수립	4
· 마을 일 만들기	· 사회적 경제 활동을 위한 환경(여건) 만들기	2
	·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등 창업 교육	4
	· 자원개발 및 관계자 관리 - 지역자원 발굴, 상품화, 홍보·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등	4

## 2) 가족센터 돌봄공동체 직무 교육

### 가) 사업담당자 교육

- 대상: 사업담당자
- 내용: 돌봄공동체 사업의 행정적 지원, 돌봄공동체 이해, 공동체 지속가능성 확대 방안
- 방법
  - 온라인 강의를 통한 업무 이해 교육
  - 집체 강의 및 컨설턴트 그룹 코칭
  - 선진지 견학
  - 코디네이터 또는 팀장 연결망 구성 포함
- 교육 과정(안)
  - 돌봄의 가치 및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
  -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사업의 목적과 의미, 사업내용과 대상, 사업운영 방식
  - 신규 돌봄공동체 발굴,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돌봄공동체 발전 방안
  - 지역사회 내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 가족센터 사업과 돌봄공동체, 지역사회 돌봄자원 네트워크와 가족센터 역할
  - 지역의 돌봄공동체 운영사례 분석

### 나) 가족센터장 교육

- 대상: 가족센터장
- 내용: 가족센터 사업과 돌봄공동체, 지역사회 돌봄자원 네트워크와 가족센터 역할
- 교육 과정(안)
  - 센터의 전체 사업 구조 속에서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사업의 위치와 역할
  -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가족센터 위상과 역할

## 5. 실적 관리

### 가. 보고 사항

- 당해연도 1월에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함.
- 운영기관은 매월 실적을 해당 지자체와 총괄 관리·운영기관에 제출
  - 사업 운영기관의 공동체 지원 실적과 공동체 활동 실적
- ※ [서식 2-1, 2-2] 돌봄공동체 사업 실적보고서(○월) : 운영기관 작성용/공동체 작성용 참조

<표 III-9> 사업 보고체계

보고사항	주체	보고대상	시기	양식
(연간) 사업계획서	가족센터	시군구→시도→ 여성가족부	당해 연도 1월	[서식 1]
예산교부신청서	가족센터			시군구 서식
(연간)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가족센터		익년도 1월	추후 통보
월별 실적보고서	가족센터	한국건강가정진 홍원→여성가족 부	익월 첫째주	[서식 2-1] [서식 2-2]
(수시) 사업계획, 운영현황 등 변경 사항	가족센터	총괄관리 운영기관	익월 첫째주	-
		시·도 시·군·구	변경시행 전월 20일까지	

- 월별 실적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사업 운영기관의 공동체 지원 실적과 공동체 활동 실적
  - ※ [서식 2-1, 2-2] 돌봄공동체 사업 실적보고서( 월) : 운영기관 작성용/공동체 작성용 참조
- 성과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월별 실적 및 돌봄공동체 사업 결과 보고서 종합
  -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 추진실적 평가, 정성평가 결과, 우수사례 포함

## 나. 성과 점검

### 1) 월별 실적 점검

- 사업 운영기관의 공동체 지원 실적과 공동체 활동 실적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돌봄공동체 활동 유형별 활동 계획, 공동체 지원 계획, 돌봄 활동 연계 계획, 홍보 추진 계획 중 추진 실적을 매월 말 점검하여, 월별 실적보고서 작성
  - 공동체 활동
    - 공동체별 돌봄, 긴급돌봄에 참여한 돌봄주체와 아동 현황
    - 공동체별 돌봄프로그램, 운영시간과 운영자, 아동 참여 현황 점검
    - 공동체별 돌봄주체자 회의, 공동체 네트워크 참여 등 공동체 유지활동 현황
    - 돌봄주체자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한 공동체 특화활동 현황
  - 공동체 지원 실적
    -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등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운영 실적
  - 돌봄 활동 연계 실적
    - 돌봄 자원(공간, 인적자원 등) 신규 발굴 현황

- 지역돌봄기관 네트워크 운영 현황
- 홍보 추진 실적
- ※ [서식 2-1, 2-2] 돌봄공동체 사업 실적보고서( 월) : 운영기관 작성용/공동체 작성용 참조

## 2) 성과 점검

- 월별 실적 및 돌봄공동체 사업 결과 보고서 종합하고,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 추진실적 평가, 정성평가 결과, 우수사례 포함
- 돌봄공동체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통해서 계획된 목표를 얼마만큼 성취하였는지, 사업추진을 통해서 돌봄공동체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을 적절히 달성했는지 점검하고 평가함.
- 지역사회 주민이 운영하는 돌봄공동체 조성
  - 주 2회 이상 기본 돌봄을 운영하는 돌봄공동체 비율(농산어촌형은 주 1회 이상)
  - 다양한 가족(맞벌이,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돌봄주체자의 자녀 외 아동, 자녀 미동반 돌봄주체자 참여 등이 이루어진 돌봄공동체 비율
- 지역사회 주민이 운영하는 돌봄공동체 지원
  - (가족센터, 돌봄공동체 홈페이지 이외에 월 1회 이상 관리하는) 홍보 채널 5개 이상 관리 여부
  - 돌봄 자원 DB 구축 여부
  - 돌봄공동체 참여자 평가(주민주도성, 공동체성)
- 지역주민의 돌봄 및 자치역량 강화
  - 월 1회 이상 돌봄주체자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비율
  - (돌봄 주체자 그룹의)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참여 비율(4회 평균)
  - 외부 인력이 운영한 돌봄 프로그램 시간이 전체 돌봄활동 시간의 20% 미만인 공동체 비율(농산어촌은 40%)
- 지역 내 돌봄 유관기관과 연계 활성화
  -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여부
  - 유관기관 네트워크 돌봄공동체 지원 실적(가점)
- 돌봄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구축
  - 지역 언론, 공공기관 포럼이나 회의 등에서 돌봄공동체 활동 평가 사례 유무
  - 마을 구성원과 공동 활동 추진 돌봄공동체 사례(가점)
  - 지자체 별도 예산 지원 실적(가점)

## 6. 사업 예산

- 예산 편성 및 집행: 가족사업안내 I 권 「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및 센터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따름.



- 사업운영기관 사무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사업운영기관 필수 편성 사업비: 돌봄공동체 지원비, 교육·네트워크 사업비 등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돌봄공동체 사업 지원금 편성 기준(예시)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내역
사업비	돌봄 공동체 사업비	돌봄 공동체 사업금	돌봄 공동체 지원금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대여비, 수수료 등</li> </ul>
				업무추진비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운영을 위한 사업기획, 업무논의 등</li> <li>※ 자체 회의비 사용 가능. 회의록, 참석자 명부, 사진 보관 전체사업비의 5% 이내 편성</li> </ul>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기관 교육, 간담회 등 참여 시 책정</li> </ul>
				홍보비 (현수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수막,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 구입 비용</li> </ul>
				간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5천원 이내 / 1일 1회만 제공 (※ 돌봄 활동에 한함)</li> </ul>
				급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1회 8천원 이내 제공</li> </ul>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20천원 이내 / 1회</li> </ul>
				외부강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프로그램 강사비</li> <li>■ 지역 내 강사 활용 권장</li> <li>※ 돌봄주체자 중심의 돌봄활동 및 프로그램 권장</li> </ul>
				체험료 및 입장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3회 이내, 참석자 1인당 30천원까지 보험료 등 별도 책정 가능</li> <li>※ 회원 참석자 명단 및 사진 증빙</li> </ul>
				역량강화 ※ 총 10% 이내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공동체 관련 외부교육 참가비(전체예산의 5% 이내 편성)</li> <li>■ 돌봄을 위한 강사 초빙 내부 역량강화교육, 돌봄 관련 부모교육 등</li> <li>※ 힐링·취미 프로그램 불가, 이벤트성(1회성) 활동 지양</li> </ul>

- 예산액은 돌봄공동체의 규모와 활동량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 등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함.
- 예산 지원 중단
  - 1개월 이상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사전 협의없이 계획을 변경한 활동 추진, 예산의 임의 사용, 아동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돌봄 활동, 영리활동과 결합된 돌봄 활동 등이 발생될 때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단, 당초 계획과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변경 요청 등 행정 절차에 대한 미인지 때문이라면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와 향후 재발 방지를 상호 협의함.

- 돌봄공동체가 겪는 애로사항, 중단·지연·부실·축소 운영 등의 사유를 파악하고 센터에서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협의함.
- 돌봄공동체의 활동 중단이 지속되거나 계획과 상이한 활동의 반복 또는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등이 확인된다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활동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중단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함.

- 돌봄공동체와 활동 전반에 대한 소통, 애로사항 파악, 개선 여부 판단
- 돌봄공동체에 개선 요청
- 돌봄공동체 방문 및 면담 : 개선 재요청 및 중단 가능성에 대한 안내
- 돌봄공동체의 의견 청취(소명 기회) : 돌봄공동체의 제안 내용이 있는지 추가 확인
-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중단 여부 결정 : 소명 범위까지 포함하여 결정
- 돌봄 공동체에 중단 여부 안내
- 지자체 공문 발송

※ 사업예산은 2023년 시범사업 예산 기준임.